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8,612,252	18,858,368
일반회계	615,100,171	18,453,005
특별회계	13,512,081	405,362
기타특별회계	13,512,081	405,362
의료급여특별회계	867,005	26,01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757,179	52,715
주차장특별회계	8,240,691	247,221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,242,582	37,277
재정비축진특별회계	1,404,624	42,13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,161,56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금후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